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3. 21(화) 10:00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08호
- 나. 제출자 : 엄셋별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3. 10.
- 라. 회부일자 : 2023. 3.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청원심사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 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제정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상위 법령을 적용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 2) 「청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발의한 안건임.

- 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금천구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불수리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안 제5조는 접수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의장이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안 제7조와 제8조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청원심사에 필요시 소개한 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청원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2가지(구청장이 처리 또는 의회에서 처리)로 구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
- 안 제12조는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청원인에 대한 통지와 청원 철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조정한 규칙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권리규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정 [1995. 3. 1 의회예규 제6호]

(일부개정) 1998.07.03 의회예규 제17호

(일부개정) 2008.03.27 의회예규 제34호

(일부개정) 2016.04.28 의회예규 제5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3.27., 2016.4.28.>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03.27., 2016.4.28.>

②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제2조의2(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8.03.27., 2016.4.28.>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8.03.27>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08.03.27>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7. 3, '08.03.27>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다. <개정 '98. 7. 3>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08.03.27>

제5조의2(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98. 7. 3>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4.28.>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금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금천구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4.28.>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사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08.03.27., 2016.4.28.>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08.03.27>

부 칙

이 규정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 3)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